

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규정

- 제정 : 2014. 1. 21.
- 개정 : 2014. 11. 6.
- 개정 : 2018. 12. 7.
- 개정 : 2019. 11. 29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산학협력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산학협력교육을 전담하는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임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산학협력중점교수라 함은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, 연구, 창업 및 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, 산학협력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으로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

- ①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: 최초임용 시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된 교원으로 계약제에 의해 임용되는 비정년 전임교원
- ②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: 최초 임용 시에는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되지 않았으나, 추후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지정된 정년 또는 비정년 전임교원

제3조(자격)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민간 산업체, 국가기관,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자로 한다. 다만, 재직 중인 교원은 산업체 경력과 관계없이 산학협력중점교원을 지정할 수 있다.
- ② 다음과 같은 사유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체 경력 10년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.
 1.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 자. 단 창업한 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라도 산업체로 인정
 2. 기술사,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
 3. 석/박사 학위 소지자(산학협력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산학협력중점교수에 한하며, 석사는 2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)
- ③ 교육공무원법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
제4조(임용) ①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다음 각 1호와 같이 임용한다.

1.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용은 공개 또는 특별채용으로 한다.
2.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연봉 및 기간 계약제로 임용한다.

3.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

4.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임용의 절차는 교원신규임용규정 제2장을 준용한다.

②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다음 각 1호와 같이 임용한다.

1.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지정받고자 하는 교원은 별지서식1의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신청서를 제출하고, 총장이 신청자 중 임명한다.

2.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지정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.

3.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.

제5조(직급)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직급은 조교수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, 연구 및 산업체 경력연수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위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6조(임용계약 및 보수) ① 대학의 장은 임용권자로부터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한을 위임받아 교원의 교육·연구·산업체 경력을 고려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한다.

② 산학협력중점교수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임용기간의 연장시 연봉 조정은 본교 전임교원 보수 인상률 한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.

④ 상여금과 각종 제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단,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중 호봉을 적용받는 정년제 전임교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7조(퇴직금) 본교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임용기간 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가입하며, 그 적립액은 퇴직금으로 대치되다.

제8조(복무) 산학협력중점교수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복무규정 및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을 적용한다.

제9조(의무) ① 산학협력중점교수는 학과에 소속되며, 산학협력을 전담하기 위하여 강의 시간의 30%이상을 경감 받을 수 있다.

② 산학협력중점교수는 학사업무협조 등 본 대학교 교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③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총장의 승인 없이 타 기관에서 강의할 수 없다.

④ 산학협력중점교수는 10월 말일까지 업무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본교에서 전일제(full-time)로 근무하여야 한다.

제10조(역할) ① 현장실습, 현장견학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, 정부출연기간 및 산업체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교육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다.

② 산업기술 인력의 재교육과 교내외에서 운영되는 각종 산학협력 관련 연구 및 교육 등을 담당한다.

③ 대학과 기업 간의 산학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운영, 기업지원을 위한 기술지도 및 자문

등을 담당한다.

④ 학생들의 진로 지도 및 취업알선 등을 담당한다.

제11조(신분보장) ①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임용기간 중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책임과 신분을 보장한다.

②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계약기간 중 형의선고, 징계처분 또는 법인정관과 인사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. 다만, 소속 학과의 개폐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2조(기간제 재임용)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재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를 준용한다.

제13조(업적평가) ①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업적평가는 매년 10월까지 제출한 업적을 기준으로 하며, 이 자료는 재임용 및 연봉책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②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업적평가표는 따로 정한다.

제14조(기타)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인사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서식 1)

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신청서

1. 신청인 인적사항

성명		생년월일	
소속		직 위	

2. 산업체 경력사항

근무처	담당업무	직급	근무기간

3. 산학협력활동 계획

4. 지정기간: ○○○○. ○○. ○○. ~ ○○○○. ○○. ○○. (1년)

위 본인은 「수원과학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규정」에 의거하여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신청하며, 「수원과학대학교 교원인사 규정」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:

(인)

수원과학대학교총장 귀하